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3. 4. 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4. 10.

다. 의안번호 : 제 2003 - 14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수승대 관광지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13필지, 100,098m<sup>2</sup>와 구연서원 및 관련시설물(13건)이 관광객에게 개방 이용되고 있어 현재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이하로 보조하고 있으나,
-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함.

나. 주요골자

- 관람료 수입금액 중 100분의 20 이하 보조금 ⇒ 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

### 3. 검토의견

- 현행 관광지내 위치해 있는 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사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군수가 매년 행사시 관광지 내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야외극장 무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시설물 보존관리 경비 명목으로 수입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보조금 ⇒ 사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즉, 임차료) 지급으로 개정
- 개정 조례안에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으며, 그 외 임차계약에 의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중점검토내용

첫째, 용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동 조례 제1조에서 “수승대관광지”를 “관광지”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관광지구 ⇒ 관광지로 통일해야 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료” ⇒ “임차료”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사용료 :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그의 재산 및 영조물을 이용하는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공과금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불하는 돈

둘째, 현행 조례와 같이 개정안에도 단서조항으로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거창신씨 요수종중 시설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소유자 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문화재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 징수문제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봅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시·도지정문화재에도 준용, 제58조)

○ **관광진흥법 제64조(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셋째, 조례를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사용료” 지급으로 개정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단서에서는 보조금을 줄 경우 임차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임차료와 행정기관에서 사무와 사업을 위한 것과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교부금 성격의 보조금과는 별개입니다.

○ **보조금의 정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한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

## 4. 참 고

- 관광진흥법 제 64조 (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